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

투표구명	인 구 수 (년 월 일 현재)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인구수에 대한 선거인수 비 율(%)	세 대 수	비 고
		계	남	여			

- 주 : 1. 인구수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의 인구수를 기재한다.
2. "인구수 ·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 세대수"란에는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따로 적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수를 적어 각각 쉽표(.)로 구분한다.
3.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가지거나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어 선거인수가 다른 경우에는 선거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선거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

투표구명	① 인구수 (년월일 현재)	②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③ 직권수정에 의한 감	④ 이의·불복신청등의 결정에 의한		⑤ 확정된 선거인수	⑥ 거소투표 신고인명부 등재자수	⑦ 선상투표 신고인명부 등재자수	인구수에 대한 선거인수비율 (%)	⑧ 세대수	비고
				증	감						
		계									
		남									
		여									

주 : 1. 이 서식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①란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의 인구수를 기재한다.
- ②란은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상의 선거인수(거소·선상투표신고인수를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 ③란은 선거인명부확정 전까지 사망자·선거권이 없는 자 및 이중등재자 등의 발견으로 직권수정하여 감소된 선거인수를 기재한다.
- ④란은 선거인명부열람에 의한 이의·불복신청에 대한 결정 및 선거인명부열람기간이 지난 후부터 선거인명부확정 전까지 누락자에 대한 명부등재결정으로 인하여 증감된 선거인수를 기재한다.
- ⑤란은 ②란의 선거인수에 ③·④란의 수를 증감한 수를 기재한다.
- ①부터 ⑧까지의 란에는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따로 적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위원 및 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작성(⑥⑦란 제외)하되,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수를 적어 각각 점표(.)로 구분한다.
-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가지거나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어 선거인수가 다른 경우에는 선거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이 통보서에는 별지 제1호 <선거인명부수정상황>과 별지 제2호 <선거인명부확정내역>을 작성·첨부한다.

<별지 제1호>

선거인명부수정상황

투표구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성명	수정내용		수정사유	비고
			수정전	수정후		

주 : 1. 수정사유란은 이의신청·불복신청등에 대한 결정, 오기, 누락, 이중등재, 사망, 선거권이 없는 자 등으로 기재한다.

2. 선거인명부에 누락되었던 자가 "세대주"인 때에는 비교란에 "세"라고 기재한다.

3.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과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비교란에 각각 "주민등록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라 적는다.

<별지 제2호>

선거인명부확정내역

투표구명	확정된 선거인수 (①+②+③)	① 주민등록이 된 거주자·거주불명자 선거인수						②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 선거인수						③ 외국인 선거인수	비고
		계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	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	선상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		계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	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	선상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			
		계						계							
		남						남							
		여						여							

주 : 이 서식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①란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선거인수를 기재하되,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 거소·선상투표신고를 한 선거인,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②란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 선거인수를 기재하되,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 거소·선상투표신고를 한 선거인,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 거소·선상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은 동시선거에서 일부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는 경우(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제2항제2호에 해당 하는 자)에는 선거별로 구분하여 그 수를 기재한다.

③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위원 및 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외국인선거인수를 기재한다.

(거소투표신고인명부)·(선상투표신고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

[illegible]

주: 1. 인구수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의 인구수를 적습니다.

2. "인구수·선거인수·확정된 (거소투표)·(선상투표)신고인수"란에는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따로 적습니다.

3.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가지거나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어 선거인수가 다른 경우에는 선거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거소투표신고인명부와 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구분하여 각각 작성한다.